

# 부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년 5월 2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3년 5월 2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04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(2003년5월13일) 상정
- 제104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(2003년5월14일) 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민원허가과장 강성모)

### □ 개정이유

-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발급센터에서 발급함으로써 위임사무중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주민등록법의 개정에 따라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, 보완하려는 것임.

### □ 주요골자

-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(안 제2조제1회)
-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, 초본에 관한 사항의 법 인용조문을 조정함(안 제2조제4호)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input type="radio"/> 없음	<input type="radio"/> 없음

### 4. 토론요지

#### 가. 찬성토론

없음

#### 나. 반대토론

없음

### 5. 심사결과

원안의결

### 6. 소수의견 요지

없음

### 7. 기타 필요한 사항

없음

## 부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121호
의결연월일	2003.5.15 (제104회)

제출년월일 : 2003. 5. 2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### □ 제안이유

-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발급센터에서 발급함으로써 위임사무중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주민등록법의 개정에 따라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 □ 주요골자

-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(안 제2조제1호)
-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·초본에 관한 사항의 범 인용조문을 조정함(안 제2조제4호)

## 부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단, 제4호”를 “다만, 제3호 및 제4호”로 하고, 동조제1호를 삭제하며, 동조제2호중 “법 제18조의2”를 “법 제1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5조”로 하고, 동조제4호중 “법 제18조 영 제45조 및 제45조의3”을 “법제18조·동법시행령 제43조·제44조 및 제44조의2”로 하며, “등·초본”을 “등·초본 교부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 (권한위임)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. 단, 제4호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 및 동장도 처리한다.</p> <p>1. <u>법 제17조의8 및 영 제36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</u></p> <p>2. <u>법 제18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. (생략)</p> <p>4. <u>법 제18조 영 제45조 및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·초본에 관한 사항</u></p>	<p>제2조(권한위임) ----- ----- ----- 다만, 제3호 및 제4호----- -----</p> <p>1. &lt;삭제&gt;</p> <p>2. <u>법 제1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5조</u>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법 제18조·동법시행령 제43조·제44조 및 제44조의2</u>----- ----<u>등·초본 교부</u>-----</p>